

제418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8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감사원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헌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법무부 소관
 - 대법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1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2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3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회 제출)
 3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
 3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4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현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4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27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27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27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4)	27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37
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7
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37
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제출)	49
12.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54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54
1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54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54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4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4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4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4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4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5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60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	60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60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60
2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60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61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3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2
3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3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74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6일과 7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0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390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은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 특수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588명의 수당 및 고용부담금 지급을 위해 전자감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민사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용실적이 미흡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치 예산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범죄피해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86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 민영교도소 노후시설 개선 비용 확보를 위해 자체 수입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1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1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무상사용 방침에 따라 법제교육 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4억 7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 예산 절감 편성 차원에서 법령해석국 20주년 세미나 개최 예산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300만 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개편을 위한 7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없이 9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감사원 업무용택시 예산도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 원과 국내여비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 증액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예산 3억 9900만 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사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5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 원, 본부기본경비 중 과다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2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18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38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본부 운영지원 공공요금에서 202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예상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등의 해소를 위해 국선변호료 지원예산 178억 6600만 원,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각장애인 접역서비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 사업의 조사연구비 2500만 원을 일반회계 사법정책 연구개선 사업의 정책연구비와 통합하기 위하여 이관 및 감액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38억 4800만 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억 원 등 총 5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명확히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내역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까지 충분한 자료제출과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 제출, 늦장 제출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고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들 상당수는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의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소관 특정업무경비와 법무부 전체 관서업무추진비 등은 정부 원안 의결하였고 감사원의 관서업무추진비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등 두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타 부처 예산 심사를 많이 해 봤지만 법사위처럼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특혜와 예외가 없는 예산 심사가 또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소위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소위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소위원장, 예산소위 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장경태 소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 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무슨 아무 관계 없는 얘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송석준 위원**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팩트를 왜곡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번 예산소위를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 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4억 1964만 원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6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된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감독 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특수직 직무수당 이것은 2억 7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중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감호실무관 이것도 1억 75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딥페이크 분석, 딥페이크 대책을 위한 영상분석 시스템은 2억 8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진술조력인 배치를 위해서……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정청래** 급여 현실화 및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위하여 8600만 원은 증액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간사님! 이것 발언 총량 적용해요, 발언 총량.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토론을 들으면 되지 일방적으로 얘기……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법제처 소관 어린이 법제관 사업 홍보는 15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가법령정보통합검색 서비스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8억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사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반수용비 중 업무용택시 4억 5000만 원 중에서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듯이 마사지실, 노래방 등 근처에서 택시를 탔던 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택시요금만 반영을 하고 4억 5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그걸 봤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 위원장이?

○**곽규택 위원** 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지금!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상범 위원**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장경태 위원** 로데이터 제출 안 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확인 안 됐습니다, 제출 안 해서!

○**유상범 위원** 확인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어요?

○**장경태 위원** 로데이터 제출 안 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국내 여비 57억 4800만 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감액 이 부분 고려하여 1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모든 걸 정당한 것처럼 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를 하면 어떡해요?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 지원을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38억 4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여기 있는 내용 다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곽규택 위원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이야기했고!

○유상범 위원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뭘 그래요.

○곽규택 위원 혼자 회의해요, 혼자?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유상범 위원 조용하고 말 게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말 안 하면 조용히 할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언제부터 위원장이 이렇게 일일이……

○송석준 위원 본업무에 충실하세요, 본업무에!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145조 1항에 근거하여 유상범, 곽규택, 1차 경고합니다.

○곽규택 위원 이것 다 읽어 본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이 다 보고했고!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합니다, 두 분. 조용히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겁니다.

○곽규택 위원 뭘 신상에 좋아요, 무슨! 어디 협박하고 있어?

○유상범 위원 신상에 좋긴, 뭔 협박이에요, 그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한테 경고 주세요, 1차 경고. 1차 경고 드리세요.

○장경태 위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국민 담화 잘 하더만,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일단 손 들어 보세요.

○주진우 위원 토론시간이 왜 3분이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데 3분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용민 위원 3분이면 충분하지요.

○송석준 위원 이 중요한 예산을 5분은 줘야지, 5분.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실 위원님 일단 손 들어 보세요.

체크하세요.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3분 시간 주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정청래 말이 돼요.

○조배숙 위원 안 됩니다!

○송석준 위원 뭐가 말이 됩니까, 뭐가?

○유상범 위원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3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예산……

○ **주진우 위원** 예산 대충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은 토론 안 하십니까?

○ **유상범 위원** 아무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 **곽규택 위원** 손 들지 마세요! 손 들 필요가 뭐 있어요?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보세요.

○ **유상범 위원** 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뭘 손을 들어?

○ **곽규택 위원**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뭘 손을 들어요?

○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 **장동혁 위원** 저희들이 예산만큼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증액에 대한 동의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 그리고 부처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된 것처럼 법무부와 감사원 특정 기관의 특정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저희 여당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었고요. 물론 자료제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또 그 이전에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폐널티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그와 같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사위에서는 또다시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그것을 무한 반복하다가 법정 시한 안에 여야가 예결위에서 예결위안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안이 올라가고 결국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의 협상 지렛대를 위해서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특정 기관에 대한 특정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일부 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합리적인 범위 내로 감액 규모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토론하세요.

○ **이건태 위원** 예결소위에서 비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의도 많이 했습니다.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마는 마치 우리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여당 예결위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의결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전히 대해서는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예산 심사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경비 관련해서도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착수권 대부분이 검사의 권한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또 특경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예 자료를, 어제 심사종료 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택시비가 문제가 됐는데 그 택시비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예컨대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타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증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어디서 택시를 탔는지 이것을 알려면 로데이터를 제출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그 로데이터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액을 삭감할 수 있지만 국회의 예결소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 분석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비쳐진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1억 2000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겁니다. 이 택시비는 2021년도에는 1억 정도밖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최근에는 5억까지 늘었어요. 그런 부당한 것을 우리 소위에서 발라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예산 심사였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의 경우, 특히 검찰의 경우……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말 좀 합시다.

○유상범 위원 아니, 토론 좀 합시다, 토론 좀.

○위원장 정청래 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2를 깎아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거고.

○위원장 정청래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곽규택 위원 아니, 혼자 그렇게 떠드시면 어떡해요? 토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두 분 발언권 중지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좀 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토론시간에 하세요.

진짜 너무해요!

○곽규택 위원 발언권도 안 줘 놓고 무슨 발언권을 중지해요?

○김승원 위원 모욕적인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곽규택 위원 무슨 모욕적인 말을 해요? 신상 조심하라는 말이 더 모욕적이지.

○위원장 정청래 원래 법은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유상범 위원 직접수사 중지해서 특수부 다 줄였잖아.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2대 범죄만 수사하고 있는데 6대 범죄 수사할 때의 인력,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못 했을 뿐입니다.

원래는 검찰 예산·인력은 3분의 2를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것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상범 위원 토론시간이면 토론 기회를 주세요.

○송석준 위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백번 양보해서……

○유상범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토론 중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학원 강의실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백번 양보해서 누차 얘기했듯이 내역을 입증하라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같은 부처 있습니까?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제출 안 하는 부처가 감사원, 법무부 말고 또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안 하길 뭘 안 해요? 자료가 제출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사실 아닌 얘기를 자꾸 그렇게 또……

○주진우 위원 전의 수준 이상으로 다 냅습니다.

○유상범 위원 토론시간 주세요, 그만하시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유상범 위원 아니,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서영교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들어 보게.

○곽규택 위원 시끄러워요!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시끄러! 조용히 해!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 법무부처럼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신 화내 주는 그런 상임위도 없을 겁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지금 3분을 위원장님 혼자 다 발언하십니까?

○조배숙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유상범 위원 대신 화내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토론시간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항의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 그만하십시오. 아니, 무슨 법사위 올 때마다 훈수 들으러 온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감사원 예산이 그동안 잘못됐다고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지금

유상범 위원, 곽규택 위원의 발언들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송석준 위원 여기가 강의실이 아니에요, 강의실이!

○서영교 위원 안 들려요, 좀.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까지.

자, 할 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곽규택 위원 할 말 많아요!

○위원장 정청래 한 분씩 더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토론 기회를 다 줘야지.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은정 위원 이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감사원 등등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예산안 제대로 심사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제가 좀 아쉬운 표현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비 24억 이것은 그동안 검찰…… 2024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무분별한 야당 탄압 수사, 표적 수사 등에 활용된 디지털 캐비닛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검찰의 캐비닛이에요. 포렌식을 끝도 없이 해 가지고 제대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캐비닛에 넣어 놓고 야당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포렌식 연구개발비, 이것 인정해 줘야 됩니까? 저는 이 24억,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감시·감독해야 되고 거기에 연루된 불법행위 저지를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어제 예결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났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이나 하게 기회는 다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토론하세요.

지금 주진우 위원 토론시간 주고 있잖아요. 주지 마요?

○유상범 위원 다 주세요, 우리한테. 아까 다 손 들었잖아.

○위원장 정청래 다 줄지 말지는 위원장 재량 사항이에요.

○유상범 위원 또 마음대로?

○위원장 정청래 예.

주진우 위원 토론하세요.

○주진우 위원 저는 이렇게 민생 침해 범죄, 마약 수사, 공무원 비위 감찰 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유관 부처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혼드는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심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품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조치인 것이, 법무부와 감사원은 과거 국회에서 냈던 것 이상의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 했다?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안 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것 이상은 낸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국회는 자료가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것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에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심사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0원으로…… 예산을 일부 1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택시비 자료 실컷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왜곡해서 감사원의 설명 내용이 왜곡되게 해 가지고 그 원자료, 감사원이 냈던 바로 그 자료가 특정 언론사에 버젓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이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예산 심사입니까, 망신 주기지.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이 빠짐없이 다 깎고 없앴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감사받았다는 사유로 이렇게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밤 11시까지 넘어서 일했던 감사관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깎으면요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범죄 수사 대응력,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업무에 아예 본질적으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럴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실시간으로 예산소위를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예산소위에 임했던 위원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몇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유상범 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토론의 시간이고 토론 기회를 주면 되는 거고……

○**송석준 위원** 아니, 본인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이 보복했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보복한 것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예산 심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자, 본인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 발언 기회 주세요. 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3분밖에 안 주는데 기회 한 번은 줘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유상범 위원** 그만하고 기회 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발언 기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검찰을 실제로 마비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마비 얘기하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았듯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얘기하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곽규택 위원** 지금 예산 심사하는 중에 무슨 소리 하세요?

○**유상범 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예산 심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세요.

○**박준태 위원** 아니, 발언 기회 주고 질의하십시오, 그냥.

○**곽규택 위원** 예산 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심사?

○**위원장 정청래** 이런 말을 생각을 못 했는데 주진우 위원이 이런 발언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여기 다 손 들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소위원회 한 말씀 하세요.

○**장경태 위원** 어제, 그제 예산결산소위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 됐건 이 예결소위에 참여하신 여야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 생각하고요. 또 기관장과 부처에서도 어찌 됐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타 부처 예산 심사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에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이렇게까지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심사…… 예외와 특혜, 성역이 너무 많은 법사위였다고 생각하고요. 타 부처에 비해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에 맞는 심사, 당연히 결산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했다는 점, 예를 들면 택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반경 100~200m 이내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했고요, 그 전에도 과거 관례를 따져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장소에서 출발…… 도착지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출발지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뭐 GPS가 어떻게 됐느니라고 하지만……

○곽규택 위원 그 출발지가 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경태 위원 그래서 그 GPS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로데이터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데이터 제출하지 않았고요.

과거의 관례 얘기하시는데,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의 검찰 출신 위원님들 법사위에 있으면 됩니까?

○유상범 위원 거기 있네. 거기 세 분이나 계시네.

○곽규택 위원 많네! 다 빠집시다, 그러면. 다 빠져.

○장경태 위원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예산 심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장경태 위원 그리고요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R&D 예산, 디넷에 관련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R&D 예산 24억에 장비 유지비까지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125억 정도 되는데요—디넷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당시 부처로부터 디넷의 법적 통제 장치를 결산 심사 시까지 만들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정말 아무런 예외도 없는, 특혜만 있는 이런 법사위의 예산 심사가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활비, 특경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아무런 견제 없는 법사위야, 아무도.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송석준 위원 저 발언권 좀……

○위원장 정청래 검찰 특활비, 특경비 가지고 지금 계속 토론 중인데요. 검찰도, 검사도 성역 없는 수사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하지만? 그러면 국회에도 성역 없는 자료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검찰만, 감사원만 자료제출 안 합니까? 자기들은 다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감사 한다고 그러면서 국회에 자료제출은 왜 성역 없는 자료제출을 안 합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께서는 운영을 하세요, 민주당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에요?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 아니, 3분씩 위원장님은……

○김승원 위원 자료제출 안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 좀…… 대체토론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어제, 그제 밤늦게까지 우리 법사위 예산소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마무리가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에 사실 여야 위원님들이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또 약자들을

배려하는 예산은 증액도 하자는 합의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하지만 어제 결과적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또 특정업무경비 또 심지어 감사원의 업무용 택시비 이것까지를 다 전액 삭감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행이라는 표현을 참 우리 동료 위원들과 우리 법사위에 대해서 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또 국민들의 치안·안전을 위해서 강력범죄, 민생사범들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해야 될 국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비를 갖다가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자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각종 민생·강력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또 보호해야 될 그 기관의 임무를 중단시키는 그야말로 진짜 만행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상 관련된 기본경비 이런 것들은,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지위에서 우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의 회계검사 그리고 또 직무감찰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국회 각 상임위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감 자료가 대부분 감사원의 이런 감사활동을 통해서 나온 국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정상적인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마비시키는 이러한 예산 결정을 다른 곳도 아닌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법사위 예산소위에서의 최종 결정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어제 부처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기관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단순한, 야당에서 봤을 때 미운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국회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국가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갖다 이렇게 사지를 잘라 놓고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국회가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업자득이 될 수 있는 못된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서 주의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팩트가 틀린 부분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님, 예산소위였지요?

○ 송석준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 송석준 위원 어떤 게 허위사실인가요?

○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 업무용택시는 전액 삭감한 게 아닙니다. 4억 5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000만 원을 살렸어요.

○ 주진우 위원 그게 거의 전액 삭감이지 뭡니까?

○ 유상범 위원 그것은 사실상 전액 삭감이지요.

○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에서 출발한 택시비 1억 2000은 살렸습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런 팩트 지적은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말!

○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합니까?

○ 박준태 위원 아니, 공무원들 일하러 다니면서 택시 타는 것까지 감액을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발언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위원 그걸 꼬투리 잡아서 또 말씀하십니까?

○ 송석준 위원 그게 전액 삭감과 유사한 그런 삭감 아닙니까?

○ 김승원 위원 그전 택시비는 5000만 원이었다잖아요. 그런데 왜 10배가 갑자기 증가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아니, 서영교 위원님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조배숙 위원님 손 들었는데 왜 넘어가요, 또?

○ 서영교 위원 아까 내가 먼저 들었어요.

○ 곽규택 위원 그러면 내가 훨씬 먼저 들었어요, 다 따지면!

○ 서영교 위원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자꾸 대들고 그래요!

○ 곽규택 위원 뭘 대들어요!

○ 송석준 위원 잘못하니까 대들지.

○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곽규택 위원님은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145조 2항에 의해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세요.

○ 유상범 위원 또 그런다. 그만해요, 그만해.

○ 송석준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 박준태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곽규택 위원 예산안 심사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감사원에 갔을 때 예산결산 관련한 특활비, 업추비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자료를 제공했는데 감사원 원장님,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내놓고 보라고 하는 건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 감사원장 최재해 그때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서영교 위원** 설명드리도록 대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관장님들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관행은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설명도 하고 감사원 직원,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분들 꼭 써야 될 비용은 이야기를 하셔서, 설명을 하셔서 이 내용을 잘 보존하시거나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돼요.

오늘 증액된 내용 중에, 무도실무관 관련해서 계호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증액됐어요. 법무공단에 민사 관련해서 민들이 와서 법무 관련한, 법률 관련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민사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결산위에다 냈고 그거 다 증액시켜 주셨어요. 오늘 증액시켜 준 내용들은 정말 공무직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때 그 비용들까지 다 지원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국선변호인들이 국선변호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거 대한변협에서도 오고 국선변호인에서도 오고 다 와서 우리가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한 번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자료 내놓으라고. 자료가 와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부터 감사원장부터 위에서 잘 하셔야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잘 해서 그 예산을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쓸 수 있고 일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야지 위에서도 제대로 안 내놓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 택시비 장경태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택시 이상하게 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택시 이상한 데서 탄다는 거는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감사원장 최재해** 거의 로데이터에 준하는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노래방, 마사지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 변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국회 인근……

○**곽규택 위원** 아니, 길거리에 노래방, 마사지숍이 천지인데 그거를 거기에 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그래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설명했잖아요!

○**서영교 위원** 잘 설명했는데 국회 인근이라고 쓰여 있고……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설명드려도 안 들으시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국회로부터 몇 km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곽규택 위원** 여기에서 택시 부르면 금산빌딩 나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일찍일찍 했어야지.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위원님도 밤늦게 택시 한번 잡아 보십시오. 이게 자기 서 있는 자리에 택시가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탈 수도 있고 또 자기 방향에 따라서 옆에 가서 탈 수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보세요. 택시 탈 때 여러분……

○**주진우 위원** 감사원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감사원장님께 이야기할게요.

택시 불러 보셨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서영교 위원** 불러 봤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택시 부를 때 내가 어느 가게 앞이다, 어디라고 주소 딱 찍어 줘요, 안 찍어 줘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그것 지도로 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아니, 택시 부를 때 그 택시가……

○**위원장 정청래** 종결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보세요. 이게 바로 질서문란 행위예요, 이게!

○**위원장 정청래** 토론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자, 이상으로 정리하는데요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승원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겸증도 해 봤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겨우 3분이에요.

○**감사원장 최재해** 명동 사무소 때문에 그래요.

○**서영교 위원** 택시 불러 본 적 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님, 명동 사무소에 저희들 사무실이 나가 있었어요.

○**서영교 위원** 감사원장님, 잠깐만요. 택시 거기서 불러 본 적 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카카오 택시 불러 본 적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있으면 자료 주세요.

○**주진우 위원** 발언권 정지 안 합니까?

○**유상범 위원** 저러고 있는데!

○**곽규택 위원** 저거 보세요. 저러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질서유지 위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왜 그것을 자꾸 자료를……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택시를 불렀는데……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다 끝났는데?

○**조배숙 위원** 3분 지났어요.

○송석준 위원 다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시끄러워요. 그만해요, 그만.

○서영교 위원 택시 불러 본 적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우리는 택시 불러 보면 바로 그 자리 앞으로 오는데……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조배숙 위원 아까 저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계속 동어 반복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유상범 위원 조배숙 위원님 줘야지요. 조배숙 위원님은 주고 하세요.

○박준태 위원 조배숙 위원님 발언권 주세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조용히 좀 하세요!

○유상범 위원 마이크 끄고 3분 하는데 누가 조용히 해요!

○박준태 위원 조배숙 위원님 주세요. 제가 안 할 테니까 조배숙 위원님이라도 발언권 주세요!

○서영교 위원 내 발언시간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시간 끝났잖아요, 지금! 발언시간 끝난 상태인데!

○서영교 위원 유상범 간사 조용히 하고, 곽규택 위원 좀 조용히 해요!

○곽규택 위원 목소리 10분의 1도 안 돼요!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서영교 위원님, 상호 토론이 아닙니다. 상호 삿대질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내 발언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곽규택 위원 발언시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두 분 좀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내 발언시간이었잖아요.

○곽규택 위원 끝났는지도 몰라요?

○서영교 위원 내 발언시간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김승원 위원 갈 길이 멍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대통령 앞에 가서나 얘기를 좀 해 봐!

○곽규택 위원 이재명 앞에 가서 이렇게 떠드세요!

○서영교 위원 이재명 이재명 하지 말고 대통령 앞에 가서……

○곽규택 위원 얼굴도 못 들잖아, 이재명 앞에서!

○서영교 위원 이재명 대표는 우리랑 소통 잘해요, 아주. 국민하고도 소통 잘하고.

○위원장 정청래 두 분 토론하지 마시고요. 상호 토론……

○서영교 위원 대통령 기자간담회는 그게 뭐야?

○장경태 위원 부부싸움이나 하세요, 그러면! 부부싸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박준태 위원 조배숙 위원님 발언권 주십시오. 토론하게 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조배숙 위원님 주세요. 3분이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김승원 간사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지만 조배숙 위원님 마지막 토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봤는데요 지금 물론 여야 위원님들이 수고하신 부분도 있어요.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특수활동비 그리고 또 특경비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0 원이에요, 0원. 그런데 저는 이건 누가 봐도 보복성 삭감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국정을,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우리 국회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대립하고 정쟁을 한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 일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도 하고 또 정보 수집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딱 그거를 손발을 자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택시비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디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꼭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서영교 위원 참 나……

○조배숙 위원 아니, 좀 끼어들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많이 끼어들었잖아요, 그쪽에서는.

○조배숙 위원 그렇다고…… 지금부터 좀 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대선배한테 그쪽에서는…… 무슨 말이 그래요?

○서영교 위원 그쪽!

○조배숙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자꾸 정쟁으로 끌어가지 말고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특경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로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안 낼 이유는 없는데 중간에 뭔가 의사 착오가 있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좀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윤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유상범 위원**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결소위를 통과시키고 또 이것을 표결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위원** 정보보안비로 꼼수 예산 다 편성한 거 알아요. 이것 깎여도 다른 거로 쓸 거 아닙니까, 정보보안비로.

○**유상범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갑시다. 이런 식의 예산안 표결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일부 위원 퇴장)

○**김승원 위원** 국민 세금을 갖다 그렇게 꼼수 편성해서 쓰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뭐 피해자인 척 하고 있어.

○**위원장 정청래**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시고 입증을 하시라,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활비도 반영해 드리겠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은 무슨 성역 있는 특별 기관인지 그런 성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대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잘 들으세요. 특정비의 경우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저에게 몇 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내역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위에서는 그것을 본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정업무경비 500억은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갖고 온 자료,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위원장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예산소위 위원들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 힘, 지금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예산소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역이 입증되고 영수증을 충분하게 제출했다, 그리고 이 특정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여야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회를 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만큼 증액을 하고 싶은데 법제사법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의견을 구해 올 경우 그것은 그때 가서 참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에게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예결위원들한테도 법무부·검찰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 내역을 입증해 주시면 아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구해 오면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장님, 감사원장입니다.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위원장 정청래** 지금 법무부장관이 답할 시간이에요.

○**감사원장 최재해** 특정비에 관련해서……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은 할 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검찰이 그렇게 영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라스트 찬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장 발언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받은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소위 때 자세한 자료를 열람 못시키고 설명을 못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작년 1년 치 자료를 준비해 와서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의결이 돼서 아까 법무부처럼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한번 검토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저희가 여지가 없는데 특정업무경비, 특경비는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검찰처럼 감사원도 위원장에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다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서영교 위원** 예결위원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자료를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다 드리겠다고.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장님, 저희들 출장 여비가 일부 삽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출장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보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몇 개의 감사 사항을 찍어 주시면 그것을 샘플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출장 여비는 저희들의 감사활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원장님!

○**김용민 위원** 이제 와서 얘기하세요? 소위 심사할 때는 뭐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합니까?

○**박은정 위원** 왜 뒷북을 치는 거예요? 심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왜 자꾸……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잠깐만요.

감사원장님,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 할 때,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때 잘하셨어야지요.

그리고요 중요한 2025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퇴장한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불만이 있고,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토론은 다 해 놓고 의결할 때는 짹 다 퇴장하고 그러면 토론조차 하지 마셨어야지, 이게 뭐니까?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당 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두 분은 남아 계시고 다른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기 말씀 있으시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볼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러면 3분간 발언하세요.

○**박지원 위원** 3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위원장 정청래 토론이 3분입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국민은 기자회견에 정답을 주었는데 완전히 거짓말, 변명, 영부인 감싸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이게 반영 안 됐어도 부정 평가가 17%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9%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궁정이 17.

○박지원 위원 궁정이 17, 지난주에는 19인데 이게 내려왔어요.

법무부장관, 당신이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사가 영부인의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고 잘못입니까? 특검은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정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박지원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 젊은 세대나 우리 세대나 부부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핸드폰 보지 않아요. 오빠, 대통령이 자는데 김건희 여사는 새벽 4시, 5시까지 오빠 핸드폰 꺼내 가지고 답장하는 것이 옳은 영부인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디도스 공격 받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군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수차, 뉴욕타임스의 안보전문기자 데이비드 생어가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대법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은요 데이비드 생어가 얘기한 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잘하지만 더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를 이렇게 뚫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국정원과 적극 협조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설적인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대책 세워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비드 생어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이버 해킹이다, 국가가 마비됩니다.

법무부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검찰이 이런 일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두 분은 남아 계시고 다른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6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11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둘째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특별검사를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를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조은희·박은정·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야당 일방으로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특검법안들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헌·위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아예.

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니까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를 추천할 때는 여당은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정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거다 대놓고 말씀을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눈이 풀려요. 그런 케변은 제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 수사 대상으로 옮겨 두고 기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별건수사 장려 법안입니까? 야당에서 별건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적한 민생 법안을 다 미뤄 두고 최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해야 될 만큼 이 특검법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까?

우리 국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또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던 그 시절의 국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불편한 얘기 해도 다 들어 주고 왜 의견이 다른지 충분히 논의해서 숙의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표결로 무언가를 처리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국회법에는 협의라고 써 있으면 사실상 합의해야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겁니다. 법문 그대로 해석해서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안 됐으니까 표결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입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국회법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관례와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선대 국회에서 물려준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 우리 법사위의 운영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민주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회의 올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반대하고 해야 되니까 참 그게 너무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불꽃이 광장에서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현법 유린, 국정 농단에 반성 없는 자화자찬만 있는 담화였습니다. 자칭 ‘순진 여사’ 감싸기에 급급한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 우롱 담화였습니다.

아내의 불법 범죄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고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은 인권 보호입니까? 김건희 특검이 정치 선동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닙니까?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의 입법권을 이해충돌, 거부권 남용으로 침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 우롱 담화로 특검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 법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드문 일이고 그 대상이 바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행위를 한 공범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주가조작 사안,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무수히 많은 관저 이전 개입, 국정 개입 등도 검찰, 감사원, 권익위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고 헌법상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이고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큰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광규택 위원님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시켰는데 이제 법안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은 해제하도록 하고 발언의 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광규택 위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닌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제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다 수사 대상으로 부쳐 가지고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또 조금 전에 있었던 예산에서도 정말 횡당하게도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근거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하겠다…… 물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검 할 만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특히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고발을 해 두고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정을 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이야기가 됐었고 또 재의요구권 행사된 다음에 부결까지 된 사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결국에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그런 입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특검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더 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릴까 참 주저하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국에서 특검법이 있다가 지금 특검법이 일몰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때 양당이 합의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다,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사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 특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데 근거가 없다, 특검의 책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 기소하는 과잉 수사가 된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상 실천에 오히려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검법이 실패를 했는데,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안이 틀렸다, 옳다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이 과연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김건희 특검법안은 우리가 토론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여야가 많이 했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은 말할 게 아니지요. 위원장님에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발언권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상범 위원 발언권 가지고 하세요.

○조배숙 위원 발언권 시간에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스포트라이트 다 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는 자기 부정입니다.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았으면서 본인의 아내 김건희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곽규택 위원 그때는 여야 합의로 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유상범 위원 지명받아 가지고 수사한 사람에게 무슨 위헌 행위를 했다고 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지.

○위원장 정청래 이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 가지고, 그만하고……

○위원장 정청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윤 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윤 씨가 아니다 하는 자기 부정과 똑같아요.

○유상범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의 논리지요. 비유가 돼야지, 적정해야지.

○곽규택 위원 누가 비유를 그렇게 합니까?

○박준태 위원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께서 특검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을 했다라는 사후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특검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비전문가네요.

○유상범 위원 아니, 답변에 대해 왜 이렇게 평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곽규택 위원 말씀이 되는 비유를 하셔야지.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당시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시간입니다, 위원장 혼자서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송석준 위원 위원님들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유상범 위원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송석준 위원 정상적인 토론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 조항, 법률 조항, 국회법 조항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의결하면 안 된다 하는 법 조항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유상범 위원 그것 빈정거리듯이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대 법사위가 아니에요. 오늘 오죽하면 특활비

전액 삭감.....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하는 말씀은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부장관께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만하세요, 정말. 위원장!

○**위원장 정청래** 오죽하면 특경비, 특활비 다 깎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대체토론하는 시간에 시간은 안 주고 위원장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송석준 위원** 국가기관을 모독하지 맙시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균택 위원** 저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질문 답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유상범 위원** 하나 더 주세요, 그래도. 3분밖에 안 되는 시간을 그렇게 토론을 종결해요?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대신 발언을 한 번 하시고, 종결 전에 발언 한 번만 더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박준태 위원** 아니, 간사는 발언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

○**유상범 위원**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합니다.

○**조배숙 위원** 대체토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 종결을 표결하려고 하는 순간 안건조정위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태 위원** 유상범 간사 발언하게 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특수 관계는 어디 가고 간사한테 발언권을 안 줘?

○**곽규택 위원** 시간 많은데 말 좀 합시다.

○**송석준 위원** 위원님들의 발언 자체를 한 번씩은 들어야지요, 최소한. 중요한 안건 같아 논의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도장까지 다 찍어서 왔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서 조정위원 등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조정위원은 제1 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위원 세 분과 국민의 힘 소속 위원 두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소속의 박은정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11시 40분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에서 의결했던 수정안을 조정안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을 비롯하여 오전 회의에 상정했던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안건조정위까지 또다시 회부돼서 이 법안이 처리되어야 되는 반복되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위헌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용을 했었다.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지만 특검이 시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기괴합니다. 사실 이전 정권이었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수용했지요. 특검 수용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안 할 테니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난 그 사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왔지요. 지금 자료화면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공천 줘라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공개된 육성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김영선을 좀 해 줘라 했는데’, 여기까지는 추천이겠지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이것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누가 단순 추천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안, 이명박 대통령 과거 사안 보면 이 정도 사안만 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당선자 신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이 다 있고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지요. 가장 힘이 셀 때 아닙니까? 내일이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가장 힘이 센 당선자, 그 사람이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러면 당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압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 수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수사 안 하니까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고 이 정권의 몰락이 곧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전현희·장경태 두 위원이 아직 안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세요.

○박은정 위원 제가 발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3분간 토론하세요.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장관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못 봤습니다.

○박은정 위원 왜 못 보셨습니까? 중요한 기자회견인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시간은 그 시간에 그러셨다 하더라도 끝나고는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못 봤습니다. 2시에 들어갔습니다.

○박은정 위원 내용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용도 그 발표문만 봤습니다.

○박은정 위원 전혀 내용은 모르시는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은정 위원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폰을 볼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폰을 마음대로 보시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뭐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 것도 보고 집사람 것도 제가 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폰, 당선인 신분일 때 본인이 대통령당선인인 것처럼 문자 보내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바쁜 경우에 간단한 답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대통령당선인 폰에는 국가기밀, 국가보안, 중요한 헌법적 내용에 대해서 들어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그것 보고 문자 주고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당선돼 갖고 취임 전에 국가기밀이 다 들어 있다는 부분은 쉽게 동의는 좀 잘 안 됩니다.

○박은정 위원 당선인 신분에 보고받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가족 간에, 부부가 상대편 휴대폰 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그게 뭐……

○박은정 위원 사적인 문자 아니잖아요. 당선인 신분에 공직자 관련해서 문자를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위원님, 제 휴대폰을 우리 집사람이 보면 우리 집사람은 공직자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우리 집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대통령이 어제 자백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본인이 당선인 지지자들,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 하는 것 ‘미쳤냐, 안 자고 있나?’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그 말의 상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나왔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 여사의 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폰 없앤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믿고 계시는데 제대로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이제 수사 시작했는데 벌써 안 되고 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박은정 위원 언론을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명태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도 수사 많이 해 봤습니다만 수사하면서 언론을 따라가서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언론이 지금 더 많이 밝히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검사를 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검사가 언론을 따라가면서 수사를 합니까?

○**박은정 위원** 언론보다 지금 더 밝힌 게 없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언론 따라가기 힘듭니다. 언론 따라가면서 못 합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김건희 폰이나 앱수수색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21조·제22조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건희 특검법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15시11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운영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 운영위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0조 3항은 손실보상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법은 제11조에서 행정기관 소속 모든 위원회는 예외 없이 존속기한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상임위 심사에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있는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존속기한을 둘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3분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사안에 대해서 인용·

기각하면서 판단하는 일종의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사법 권한까지는 미친다고……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1차는 저희가 판단하고 권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또한 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사실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운영은 굉장히 인권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어떤 범위가 아주 법률에서 제한되고 정리되는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런 기관이 갑자기 이념적으로 좌우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일반 보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반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인권위에서 특정 시민단체에게 이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가 갖고 있는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서도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인권위가 갖고 있는 본질적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정하게 지원도 해 주면서 국민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향적인 또 일방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이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사용된다면 저는 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성격과 기능을 생각할 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경호처 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호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경호원들이 경호하기 아주 힘드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지금 개인 핸드폰을 쓰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어제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폰을 부인이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해외 출장을 간 곳에 대통령이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대통령 핸드폰을 부인이 보고 쓰고, 제가 본 것에 의하면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비서세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저 김건희입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개인 폰을 쓰면 이거 북한이 전부 다 감청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그리고 미국 전부 다 이것 도청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도 이 정도는 도청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 폰을 쓰게…… 대통령한테 조언해 본 적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대통령께서 지금 사적 폰을 쓰고 계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 개인 핸드폰이 오래전에 나갔는데 그걸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공식적인 업무를 보실 때는 별도의 보안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영교 위원** 공식적인 업무는, 보안폰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나 미국이든 도청을……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보안폰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의 위치도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도청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화폰을 쓰지 않고 개인 폰을 쓴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의 기밀이 새 나갔겠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 차장으로서 꼭 전달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서영교 위원** 이런 게 제대로 된 경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대통령께서 사적 폰을 쓰셨다면 보안과 관련 없는 말씀을 나누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이야기, 그렇게 감싸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사적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대통령이 어떻게 사적 통화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안보야,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장님!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반말을 하는데, 외국 기자가 질문했더니 외국

기자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리고.

그 전 것도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드는데 ‘하나 정도만 하자’ 반말을 해요. 그리고 진행자한테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더 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존중을 하는데 특히나, 경호처에도 이야기하고 인권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 정도만 하자’,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이런 말 하지 않게, 반말하지 않게 그렇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 법안은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경호차장!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박지원 위원 대통령실의 모든 경호와 보안업무, 통신업무는 경호처에서 관리하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용산으로 이전할 때 그러한 보안장치를 국정원에 의뢰했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요. 국정원에 국정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박지원 위원 02-800-7070은 누구 전화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미 국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보안상……

○박지원 위원 누구 전화냐고 물었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박지원 위원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오빠 대통령이 쓴 핸드폰을 부인이 열어 보고 계속 문자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시점은 제가 대통령 취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들어 봐요!

○서영교 위원 뒤에도 했으니 하는 얘기지요.

○박지원 위원 ‘사적 전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우즈베크에 가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고 하면 그게 옳은 전화예요? 옳은 내용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아마 개인 사적 폰으로 하셨다면 사적 내용의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박지원 위원 사적 내용이라도 잘 아시다시피 우즈베크는 소련 연방으로 북한 대사관도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방장관한테, 우즈베크에 가 있는 장관한테 사적 전화가 되겠어요? ‘술 먹자’ 이런 전화 하겠어요? 이것은 경호처에서 막아 줘야 대통령을 바로 모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박지원 위원 보세요.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태군 씨하고 연락 끊었다’ 했는데 한국일보 인터뷰를 한 명태군 씨가 ‘전화 계속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통화했다는데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명태군 씨 얘기예요—‘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작년 11월 달에, 금년 1년 전이에요. 11월 달에 윤 대통령이 연락을 끊었는데 윤 대통령 부부하고 앙코르와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문제를 전화를 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대통령실의 경호와 안보와 통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처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적 전화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부분은 일개 명태군 씨, 브로커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어제 답변을 보면 자기 참모들한테 내가 했다고 했는데 그 참모들이 기자들한테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잘라 가지고 안 했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참모들한테,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조폭도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저하고도 잘 알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잘 압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5년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런 사적 폰을 쓰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경호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청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러 갔을 때 경찰이 막았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 경찰은 경호처에서 지휘를 했습니까, 용산서장이 지휘를 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지휘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경호 구역 안에서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매뉴얼이 경호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용산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용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휘책임자가 그러면 용산서장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호처는 지휘 책임이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구역 설정은 경호처가 하지만.....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가 경호구역이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경호처에서 하는 게 맞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경호처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설정은 경호처가 하지만 경호구역 안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 누구든 경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려면 거기의 그 경찰을 지휘한 게 경호처예요, 용산서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당연히 용산서지요.

○위원장 정청래 용산서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청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800-7070 소유주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은 '800-7070이 윤석열 대통령 전화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를 빼앗아서 한 것 아니야?'라는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전화든 공적인 전화든 대통령은 본인이 기존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당·야당을 떠나서 국가안보, 보안 문제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습관처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이어서 가끔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셔. 그래서 끊었어요. ‘아, 대통령이시니까 개인 핸드폰은 안 쓰시겠지’. 그리고 제가 ‘아,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대통령 안 받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자꾸 사적인 폰을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도 많고 실제로 사고도 나고 불필요한 국정농단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원천 봉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쓰시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인권위원회님 아까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시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우 관장님, 안창호 위원장님, 김성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순서를 잠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어선이 침몰해서 두 명 사망, 12명 수색 이렇게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행안부장관께서 그 부분을 좀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행안위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으로 제재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4조제5항은 금지되는 음주 측정 방해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외에 마약, 대마 등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밖에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께서는 소방의날 행사 참석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내용이 다 합의됐고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서 마치 안 마신 것처럼 막 마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안에서 마약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까? 들어내는 것에 동의합니까, 마약 부분은?

○경찰청장 조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상범 위원 박준태 위원이 수정할 만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질문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박준태 위원이 발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요?

○박준태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발언하세요.

○박준태 위원 내용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제23번이지요. 여기 지금 제44조제5항과 동법의 제148조의2 제2항 여기 표현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규정하는 표현이 달라 가지고 이것을 통일하자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를 빼서 표현을 맞추자 이런 지적입니다.

장관님께서 팬찮으시면 그렇게……

○경찰청장 조지호 예, 팬찮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누구든지'를 어떻게 하자고요?

○박준태 위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안건 44조 제5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

정된 안이요.

그런데 이 같은 법의 148조의2의 2항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고 한쪽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없어서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제외해서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장 정청래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거지요?

○박준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알아들으셨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없애는 것으로 통일하자 이런 거지요?

○박준태 위원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148조의2의 2항의 문구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44조 5항이 문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구와 일치시키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일치시킨다.

○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아닌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일명 ‘김호중법’ 이런 건데요. 음주를 했어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걸리고 나서 막 술을 먹고 ‘나 지금 술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음주만 하면 되는데 마약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법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약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통과를 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박준태 위원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른 얘기입니다.

○박준태 위원 다른 얘기예요.

○서영교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고……

○박준태 위원 그 취지의 법은 맞는데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그때 시민들의 사전 신고전화, 민원전화 몇 통 정도 왔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없습니다만 112 신고가 약 10여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현희 위원 그때 왜 경찰이 출동 안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그때 그 현장 경찰관들이 112 신고 접수를 하고 계속해서 112 신고가 여러 건 누적해서 접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고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아마 현장에 출동 안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때 출동을 해서 질서를 잡았다면 159명의 억울한 희생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행안부장관도 계시지만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께서는 그때 청장이 아니셨지만.

지난 9월에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금융노조집회. 그때 당시에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에 와서 소음기준을 초과했다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스피커, 확성기를 탈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과 그 집회에 참석하신 시민분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강압적인 경찰의 방패로 발등을 찍혀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집회를 강제 진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2건입니다. 2건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거기를 경찰이 강제로 출동해서 진압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10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은 경찰,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에 2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경찰 병력이 동원돼서 현장에서 강제 진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부상을 입힌 경찰. 이것 완전히 이중 잣대 아닙니까? 경찰이 이런 식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항의하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갔더니 경찰청장 그 사실을 미리 알고도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때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사실관계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사과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실관계 해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맨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경찰청에 항의 방문 온다는, 의원님들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실무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전현희 위원 좋습니다, 그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 치고.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전현희 위원 그때 그 집회에서 부상당한, 국회의원이 부상을 당하고……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에 현안질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회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전현희 위원 사과하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제가 당연히 청장으로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부분이 많은 해당 위원님들께서 제공하시는……

○전현희 위원 10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출동 안 한 경찰이 2건 민원 들어왔다고 그렇게 출동해서 강제 진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그것은 2건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확성기 보관 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유상범 간사, 국회의원은 군번이 없는 거예요, 병과가 없고. 뭐든지 질문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좋은 거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잘 들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행안부장관, 경찰청장님.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 경찰, 도서·지방에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잘나갈 때 우리 고향 진도에다가 경찰아파트 100세대를 지어 줬어요.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촌에, 도시·농촌에 행안부장관께서 9급 공무원을 공채할 때는, 미국도 그러잖아요. 그 카운티(county)에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출신들을 채용해서 도로 청에 근무를 하고 경찰도 소방관도 근무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즉 해남군청에 근무할 사람은 해남군에서 그 지역 사람으로 공채를 하면 숙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주든지 안 그러면 행안부나 경찰이나 소방청이나 공무원들의 숙소를 지어 주는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 어ennie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경찰청장!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 과거에 도서·벽지군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 출신만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일이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그 지역 출신만 있으면 또 잘못도 생겨요.

소방청장님!

○소방청차장 이영팔 저희들 소방청에서는 비상대기 숙소 개념으로서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분은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야 인구소멸도 방지되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안부장관, 박지원은 늘 옳은 말만 하지요? 안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귀한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조지호 청장, 내가 그분 고발 안 하기로 했어.

○경찰청장 조지호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박지원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저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박지원 위원님, 정말 전적으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경찰청장님, 보니까 각 지역의 경찰서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의 경찰들은 타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당수가 주거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많이들 불안정한 상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아마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지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창 경찰서 같은 경우는 거기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1 이상이 외지에서 전근을 와서 지내다 보니까 숙소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작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들이 마련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대도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도시,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저희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예산도 조금, 특활비를 줄여서 거기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잘 챙겨 봐 주시고……

행안부장관님, 내용 위낙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전국에 약 13만 호 넘게 버려진 빈집들이 있어서요 저희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농림수산부, 해수부에서 TF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연계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끼리 방안을 잘 강구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방금 경호처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경호를 잘하셔야 된다, 사적 폰 안 쓰시도록 건의해라, 박지원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경찰청장이랑 행안부장관한테도 한 말씀만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경찰서·지구대 오신다고 그러면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간인이 경찰하고 같이 순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가뜩이나 문제 많은데 플러스, 추가해서…… 왜 민간인 신분의 영부인이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경찰들한테, 같이 순시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 왜 들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께서 만약에 또 김건희 여사가 경찰서·지구대 순시 온다 그러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하고 못 오게 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2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요.

의사일정 제23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제주도 해상 재난사고가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잘 수습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세 분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과방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11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 무대리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장직무대행 김태규** 수사기관의 장은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그동안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다가 삭제를 요청해야 돼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이 수사하다가 삭제할 내용을 사실은 경찰이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하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방통위, 방심위를 거쳐 삭제할 때 훨씬 빠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항상 방심위를 통해 삭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 **방송통신위원회장직무대행 김태규**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 요청이 오면 방심위에서 24시간 내 사안이 중요한 것은 서면 교류를 통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장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방심위 통해서 삭제 요청해 온 거잖아요?

아, 잘 모르시는군요?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 유상임입니다.

이 법안은 경찰청에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기준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원래는 방심위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청하고 방통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 **서영교 위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요?

전문위원, 이것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님.

○ **서영교 위원** 예.

○ **위원장 정청래** 딥페이크 관련 법안으로 이것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사기관의 장이 삭제 요청하는 것은 추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 말해 보세요.

○ **전문위원 박동찬** 여기에서 이번에 발의된 이 법률안은……

○ **서영교 위원** 방통위의.

○ **전문위원 박동찬** 예, 방통위에 관련된 이 법률안은 지금 현행 조문이 꼭 딥페이크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조문은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사기관의 요청도 그 요건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걸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뉘앙스는……

○ **유상범 위원** 아냐아냐, 내용이 좀 달라. 이건 그 규정이 아닌데?

○ **전문위원 박동찬** 이게 3항인데요. 제44조의7 3항인데 3항은 내용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과기부장관이 하신 부분은 제44조의7 3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전문위원 박동찬** 그 말씀이면 저희 딥페이크랑은,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는 없는 거고요. 그것 시책 마련은 다른 조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계속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좀 더 공부를 해 오시고요. 우선 들어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 요청이 가장 빠르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는 방심위가 구글을 통해서 사업자가 차단시키는 일을 구글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방통위가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국내 사이트는 요청하면 그래도 삭제가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음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의 불법 사이트들인데 여기를 삭제하려면 구글을 통해서 삭제가 가야 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 봤을 때.

그런데 구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방통위나 방심위가 하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도 가하고 이번에 방통위가…… 이게 방심위 회의를 거쳐서 다시 방통위로 올 때 방통위에 그 권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문이 간 것은 수사기관의 장도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까 허위 영상물은 그동안 빠져 있어서, 딥페이크가 빠져 있어서 그것이 들어간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다 됐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님께서 방금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도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에 사업주가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 하면 금방 된다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금방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지금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서……

○**서영교 위원** 구글코리아가 다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게 국내 대리인하고 국내 지사하고 또 법인격을 달리해서 달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대리인은 본사에서는

국내 대리인을 두고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지사는 또 지사대로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사 쪽에 얘기를 하면 국내 대리인 쪽에 대응을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국내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적인 보완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빠른 대처를 해 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장관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 부분은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4조의2(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서 ‘① 과기부장관과 방통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상 합성영상등이라 함)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없던 조항이 신설된 것이고요.

2항은 ‘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이 죽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는 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영교 위원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을 제가 읽어 보면 방통위나 과기부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것 없던 것을 하려다 보면 인원이나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법사위에서 이걸, 타 상임위에서 입법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만장일치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거나 그럴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방통위나 과기부에서 잘해야 될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이대로 다 하시려면.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과기부장관께서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7에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의, 보통 여가부 산하의 센터나 과기부의 각종 행정기관에서 이런 문제 되는 영상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로 보내서 심의를 거쳐서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방통위 등에서 하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의 장이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자율규제위원회나 별도의 어떠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아니면 수사관 개인이 그냥 요청한다 해서 바로 이렇게 차단이 되면 불법정보에 대한…… 어찌 됐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오남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수사경찰 쪽에서는 심의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이것도 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방심위에는 심의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던데?

○장경태 위원 원래 보통 방심위에서 하지요, 그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방심위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바로 방통위에서 차단을 해 버리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상범 위원 과기부장관이 여기 왜 들어가?

○박지원 위원 시책.

○유상범 위원 아니, 시책이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방통위에서 마련할 부분이지. 과기부장관 빼도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장이 방통위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게 하면 수사기관의 장 누구…… 그러면 그냥 개인 수사관이 차단을 요청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런 식이……

○장경태 위원 그러면 방통위에서 수사기관에서라도 자율규제 심의를 하실 수 있게 좀,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것 문제다라고 하면 다 차단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방심위에서 일단 24시간 이내에 심의 부분을……

○장경태 위원 예, 센터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서면으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름장치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철래 유상범 간사께서 왜 과기부장관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과학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 법안에는 거의 80%는 우리 과기정통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예산도 좀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회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과기부장관께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분 넣어 주세요, 그러면.

○**박지원 위원** 과기정통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과학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젠슨 황, 앤더슨 문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예산 삭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다 이 삭감한 예산 전액을 AI, 반도체에 투자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밀어주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부분은 하여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고맙습니다.

○**박지원 위원** 유상범 간사가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김태규 위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1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1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국방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의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직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의 경우 기존 정부조직 관리·운영의 통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리가 소멸된 자가 특수매체기록의 반환 등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부·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를 위반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안 제10조제4호의 방위산업기술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미수범이 처벌되는데, 우리 형법상 과실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제5호로 분리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처벌도 고의범과 다르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료기록 확인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21조제3항 또한 함께 개정돼야 되는데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에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행정부의 재량권 축소 및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김종철 병무청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 3개가, 13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이 행안부랑 의견이 있고 또 20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게 보건복지위에 있는 법과 같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21항 이것도 기재부와 아직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조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은 부처 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고, 여기다 계류시켜 놓고 다음번에 의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 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좀 해소하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 세 법은 제외하고, 이건 위원들끼리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 간 의견이기 때문에 그 3개를 제외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배숙 위원 3개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

○ 위원장 정청래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 유상범 위원 13항 법안과 20항 병역법 이 법에 대해서는 계류를 해서 법안 정리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1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각종 국가재정 예산을 강행 규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재정 운용 자체의 활력이나 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를 강제하고 국민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시혜적으로 이것을 베푸는 어떤 재정의 지급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력 동원훈련할 때도 훈련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 유상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잘 상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행 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의 급격한 증액이나 또는 과다한 요구가 되면 결국 한정된 재정 속에서 다른 재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좀 만들어 내셔서, 국방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기재부와 사전에 소통이 되고 예산 과정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약속을 하게 되면 아마 양 기관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께 물었던 질문인데요.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사이의 문자메시지 알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다시 보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그랬어요.

지금 장관님은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이신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결정된 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몇 명을 보낼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혹시 이 참관단이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사이에 나눈 이 심리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니에요?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는 처음에 됐었는데 아직 어떤 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지금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 몇 명 이상부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몇 명 이하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게 정확하게 몇 명으로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대 파병의 정의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법 예하의 법률, PKO법하고 국방부 훈령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방부의 견해일 뿐이잖아요. 국방부의 견해지요, 그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지요. 국방부 훈령과 PKO……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 견해하고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실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파병에 해당되는데 국방부가 그것을 받지 않고 결행을 했을 때는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이건태 위원**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이건태 위원** 그러면 위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 지금 1993년부터 근 30개국에 1130여 명의 우리 장병들이 파병이 이미 됐었습니다. 이미 됐고요.

○**이건태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물어볼게요.

20명을 보냈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갔으면 파병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임무로 갔는지 또 어떤 지휘체계하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으로, 전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갔는지 임무와 역할을 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동의받지 않고 결행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걸 경고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예전에 군에 있던 분들한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어떤 군인이었나 그랬더니 ‘스마트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그 기조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24시간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세계 전략과 우리도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나 우리 국군을 파병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한국 정부가 지금 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나? 반미 정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전략 중에서 한미동맹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면 미국의 이런 전략적 수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든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조율하기 전에 불쑥불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보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했던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은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면서 새로운 신행정부와의 그런 어떤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해리스는 오히려 그런 트럼프를 공격하는 소재로 썼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모르게,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국익적인 손실일 수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략적 수정을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제가 오늘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보다 역시 장관 며칠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발전해야 돼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천지개벽이 시작됐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인수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팜비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카톡 전화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후보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이 문제를 인수위원회에서 혹시 논의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구체적 논의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는 미국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더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엊박자 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발언의 수위를 마치, 김용현 장관이 처음에 국방장관 됐을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야단쳤잖아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조금 순화시켜 나갈 것을 권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잘 새기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20항, 제21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다음 회의 때까지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 간 조정?

○**국방부장관 김용현**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국방부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 해 보시고 다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리면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장실 보좌관한테 이것이 합의가 됐다, 조정이 됐다, 안 됐다, 이건 됐는데 이건 안 됐다 이걸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장관님, 석종건 청장님, 김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16시1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농해수위 의사일정 제25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25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락된 자구를 보완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임상섭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74)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2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
-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국토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9건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2조제3항은 하나의 조문에 다수의 규율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호로 나누어 법안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9조의3제4항이 규정한 ‘시중에 유통·판매’라는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별처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상 사업추진 주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사후에 추진 주체의 대표성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비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미리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비율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 제32조제4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임의적 매수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토지 매수를 위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수반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추가 국비 지원이 없음을 전제로 현재 추진 중인 매입지 생태복원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9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0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33항 산업입지 및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그 후에 전북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음 주에 갈 예정으로 지금 일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혹시 새만금에도 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두 달 전에 가서 현장을 살샅이 돌고 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김제 용지 지역에도 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김제 용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만금공항 후보지 또 새로 신설 도로 하고 있는 데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새만금은 전북특자도의 희망입니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새만금은 전북인의 희망이 되었고요. 이게 지금 30년째 표류하고 있는 걸로 봐요. 가능한 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북특자도 주민들의, 도민들의 희망이니까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국토부가 새만금사업의 주관부서가 될 때부터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성윤 위원** 그 사업법에 용지지구의 현업축사 지구, 오염원을, 땅을 매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성윤 위원** 새만금사업법에 따라서 32조4항, 이 부칙의 시행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원래 그 조항을 연장하는 조항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저도 전주에 살고 있지만 용지지구에서 약취 민원이 한 달이면 40건, 50건씩 올라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성윤 위원** 전주의 시민들을 만나 보면 용지지구에서 올라오는 약취 민원이 엄청납

니다.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거기에 특히 가축분뇨로 나오는 악취가 저도 가 봤지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가 보시면 꼭 용지지구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새만금사업법 32조4항의 개정 문제로 오셨는데 저는 이게 인권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에 한센인들이 약 120여 분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악취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법 부칙을 개정한다고 오늘 오셨는데 4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 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장관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랑 자동차손해보장법 일부개정안이 보니까 연계되어 있는 법안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유상범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개정안이 너무 굉장히 기업의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느꼈는데 많이 수정이 됐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수정 잘되어 있고 특히 법원에서도 보니까 이것 위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다 벌칙 규정까지 배제돼 가지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유상범 위원** 법안을 잘 수정하시는 데에 애써 줘서, 수고하셨습니다.

34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당시 축사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익산시도 이 조항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축사를 매입했고 김제시에서도 축사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축사 매입은 원래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은 지방비로 해결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례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일몰이 되는데 문제는 국비 지원한 것을 가지고 익산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비만으로 축사 매입비용이 모자라서 익산시 지방비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사 매입이 안 돼서 이 특례 조항이 적용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이것 지원받을 때 각서까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유상범 위원** 양 시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특례 조항이 되면 익산시는 본인들이 국비 지원, 국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를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처리를 했는데 김제시는 보니 시비가 모자라다고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면 익산시와는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4년을 준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이게 법은 저희 국토부 법이지만 사업은 환경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계통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 2021년에 각서 같은 비슷한 그런 약속을 하고 사업을 금년까지 종료시키기로 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종료가 안 돼서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합목적적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하자는 의견과 또 재정 운용상 원칙 같은 게 깨지면 좋지 않은 선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종료를 하자는 의견이 지금 정부 내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한번 해 볼 그런 요량으로 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1분만 더 주시지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자치단체는 지방비를 가지고 축사를 다 매입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자치단체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단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해서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몇 항이지요?

○**유상범 위원** 34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오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지원 위원** 진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잠깐 순서를 좀, 다른 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빨리하겠습니다.

장관님, LH법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2년 전에 법정자본금을 40조에서 50조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그러면 다시 이렇게 15조나 법정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사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금 일부 연차별 계획에 조금씩 밀려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장경태 위원** 내년 공공주택 예산 얼마나 지금 책정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내년 25년 예산에 공공주택 예산을 15만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몇 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3조 원인가요.....

○장경태 위원 13만 호를 내년부터 착공,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허가 예정 물량으로 15만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금……

○장경태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임대주택 그때 70%, 130만 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보유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임대주택 비율은 몇 퍼센트고 지금 보유 주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유 비율이 지금 OECD 수준의 10%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접근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몇 만 호 정도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임대주택 중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80만 호가 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 주택 물량의 약 8% 이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납입자본금을 올릴 상황이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교차보전으로 다 공공임대주택 하고 계실 텐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LH공사가……

○장경태 위원 지금 임대주택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부족할 텐데 법정자본금을 또 갑자기 이렇게 2년 만에 급격하게 15조나 올리는 게, 그때도 40조에서 50조 올릴 때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국토위 소관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L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 여러 가지 산업단지 사업 같은 것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 납입자본금 49조 원이 다 찰 예정으로 있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매입 임대하고 건설 임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년에는 건설 임대가 한 4만 호, 5만 호 정도 되고 매입 임대는 신축 매입 임대가 한 7만 호, 8만 호 됩니다.

○장경태 위원 7만·8만 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보통 건설 임대가 많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실상 건설 임대이지만 LH가 사 주는 신축 매입 임대가 많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 다 지금 건설 임대 위주로 가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장경태 위원 너무, 매입 임대도 좀 하시면서 이 비율을 조정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다 신규 건설 임대로 가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년에는 신축 매입 임대가 더 많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도 발언……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서영교 위원** 박지원 대표님 하기로 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여야.....

○**위원장 정청래** 왔다 갔다, 그다음 하세요.

○**조배숙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범위에 토지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여기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김제 용지 지역과 관련된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지금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근거인 32조 4항 유효기간을 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일방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도민들의 희망을 담기는 했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상당히, 지난번에 맨 처음에 이 유효기간을 연장을 했을 때 이게 자꾸, 매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협상을 할 때 김제와 익산에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게 익산 시에서는 모자라는 국비를 자체 비용으로 조달을 했고 김제는 그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게 다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연장이 되면 결국 국비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기재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정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 책정한 액수하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자꾸, 지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상승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조금 자연이 되면서 그 지원된 국비로 다 소화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또 조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오늘은 어차피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에서 보류가 되니까 다음에 저희들 전체회의 때까지, 다음에 이어지는, 일주일 후가 될지 2주일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장관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셔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그렇게 부처 간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익산시와의 서로 또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금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좀 더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왕궁단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아까 말씀하신 김

제 쪽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급한 박지원 위원님 얼른 질의하세요.

○박지원 위원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지원 위원 저하고 잘 알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존경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지원 위원 장관의 책임은 아니지만 작년도 세수 부족이 56조, 금년도도 30조가 된 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지금.....

○박지원 위원 부자 감세를 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죽을 지경인데 2025년 내년도 전남 SOC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도별로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1조가 넘던 SOC 예산이 내년도에는 5465억 원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증액을 하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으레 이 정부에서는 SOC 예산을 줄이겠다 하면 이것은 호남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장관이 잘 아시지만 지금도 SOC가 필요한 곳은 호남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완도에, 진도에 바람 불고 기후변화가 오면 생존권이 제한돼요. 다리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판국인데 전남에 1조가 넘던 SOC 예산을 5500억으로 줄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산은 사업 공정이라든지 또 종료사업이 있다든지 또 착수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좀 등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방 SOC 예산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더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박지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취지를.....

○박지원 위원 SOC가 근본적으로, 철도가 도로가 교량이 필요한 곳은 호남이에요. 낙후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몇천 명이 사는 도서에 다리가 안 놓아져 가지고 비바람 치면 생존권이 제한돼서 그대로 살겠어요? 이러한 것은 장관께서 애정을 가지고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방의 주요 SOC는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대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주요 SOC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일이 주내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34항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염원 해소를 위한 토지 매수 근거조항 말고도 다른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축사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면 이 근거조항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국무조정 협의를 하면서 이 예산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대로 잘 푸시고, 어쨌든 이 근거조항이나 이 법의 필요성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장동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서로 좀 형평성을 맞춰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세적인 그런 합의랄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위원 말씀은 좋은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미세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한다고만 하시고 해결이 안 될 거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그 형평성의 문제나 조정의 문제를 잘 좀 해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장관님,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금년 4월에 시행됐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건태 위원 이것은 주로 1·2기 신도시 정비하는 법인데 제가 있는 부천의 원도심 거기가 소사구입니다. 소사구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천의 1기 신도시가 중동이 있거든요. 중동은 소사에 비하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훨씬 괜찮습니다.

물론 중동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기 신도시에 비해서 훨씬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게 지금 국민의 주거환경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심 내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주거환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지난 부동산 8·8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보통 15년 정도 걸리는데 원도심을 도시재생 방식으로 재생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곳은 정

비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하는 기간이 평균 1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금 국토위에 상정해서 아마 다음 차에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천시 원도심 같은 지역도 정비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지원이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장관님, 그런 일반적인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심사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 말고 지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 주셨잖아요. 그게 사업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보다 훨씬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특례법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래서 이 원도심 정비 지원법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노후계획도시도 혜택을 줬으면 당연히 원도심도 동일한 혜택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되는 지구가 처음에 1기 신도시 시작했다가 지금은 100개 지구로 전국적으로 늘어나 있고요. 그 법의 적용받는 지역이 되고 만약에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 데는 일반법인 도정법 또 도정법에 대한 특례법, 지금 국토위에 상정돼 있는 법률로 따로 법을 안 만드셔도 충분히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에 뭔가 더 추가를 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토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법률안 심의할 때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장관님,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말 이분들 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국토부장관 하는 제1 미션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장관님, 의사일정 34항 새만금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전액砍감되었다가 나중에 간신히 한 3000억 정도가 살아났나요? 기억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砍감이 아니고 집행이 보류가 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작년에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안을 처음 제출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의 노력에 의해서 3000억 정도가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가 올해 또 새만금 사업의 추진이 지금 시기가 조금 미뤄지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34항에 대해서는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토지 매수 근거인 32조 4항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국토위에서 통과가 됐고 장관님도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견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그 예산이 많은가 봤더니 300억에서 400억대 사이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그것을 위한 예산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이 그 정도 해서 투입이 된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나기로 됐던 것이 이제 약속대로 좀 물량이 다 안 끝나고 남아 있으니까 연장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법이 통과되었고, 그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조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새만금에 들어오는 강물의 수질 문제 때문이……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동진강, 만경강 그쪽 수질, 그래서 김제라든가 이쪽 익산의 축산농가들 빨리 매입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 그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승원 위원** 그래서 오늘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의사일정 몇 항이지요, 장관님? 17항인가요? 보면 이게 급발진 때문에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급발진했으니까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무슨 폐달장치가 완전히 삭제되었던데 국토위에서 통과되다가 지금 법사위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 달인가요? 시청 앞에서……

○**김승원 위원** 법안 29조의4, 개정안에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법사위 수정안에서는 29조의4(폐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가 삭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 온 법안이 아니고, 오늘 온 것은 폐달 쪽을 찍는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달면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은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아니, 29조의4가 있다가 지금 삭제된 것으로 저희 법률안 제안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 법사위 온 데서는 빠지고 동일한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같은 이름의 또 다른 법이 국토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자료 제가 보면서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올라온 자료에는 빠지고요. 국토위 통과 과정에서 그걸 빼고 다른 법에 넣어서 같이 병합 심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올라온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

신 것은 아직까지 국토위에 남아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29조의4가 국토위에서 통과되었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된 건지 그걸 여쭈어본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건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그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심사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그러니까 아마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토위에서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삭제된 것은 아니고 국토위에서 아예 그 조항을 빼서 다시 다른 조항들하고 같이 병합 심사를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빼고 지금……

○**김승원 위원** 추가 더 심사하고 나중에 통과되면 법사위로 올라올 예정이라는 말씀이군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것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위원장도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3분 넣어 주세요.

장관님, 철도국장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부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기조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기조실장도 하고.

○**위원장 정청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대장홍대선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정청래**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됐고 2022년도에 4477억 국비가 배정돼 있고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홍대부터 시작을 해서 부천의 대장까지 가는 역 약 2km,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 철도인데요. 광역철도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초여름에 시행 협약을 제가 가서 맺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0년도에 상암동 주민이 오しゃ 가지고 ‘상암동이 앞으로 발전할 건데 지하철 좀 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김기덕 의원 공약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기까지 1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지하철을 놓는 이유는 교통이 많은 데 교통 편의를 위해서 보통 지하철 이런 걸 놓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홍대를 출발해서 성산역, DMC역, 상암역, 덕은역, 강서구, 부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DMC역이에요. 그런데 DMC역을 빼 놨어요, 역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때 막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알아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역 간 이격거리는 1km, 시속은 50km 이거 법규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산역을 하고 상암역을 하면 교통 수요가 제일 많은 DMC역은 우리가 빼놓으면 지자체에서,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겠지 그러면서 원인자부담으로 돌려 버리고 그렇게 그냥 빼놓은 거예요. 이건 꼼수지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정작 제일 필요한 데는 빼놓고 발표를 했어요.

장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자체 돈도 국민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 세금이에요. 같은 국민들이 내는 혈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토부 철도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DMC역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장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언제 따로 한번 볼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따로 따져서 한번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0항까지 그리고 제33항 및 3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6항, 27항, 31항 및 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잘 검토하시고요. 이 자체가 또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정청래** 특히 마포 DMC역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소상히 한번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 SOC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여가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35항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자녀 출생 신고 시 공공 및 민간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중복적인 학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숙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57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복지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허가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미뤄 뒀던 법안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미 청장님, 지난번에 왜 얘기도 없이 허락도 없이 불출석해 가지고 법안 의결을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출석사유서 위원장님께 승인받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꼭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병관리청에서 국회 의결을 발목 잡으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역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역미 감사합니다.

3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6시5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알았어요. 잠깐만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34항 새만금법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법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위원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이 중재하는 대로 안을 만들어 오면 그때 결정하자는 의견들을 조배숙 위원님도 내셨고 장동혁 위원님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 버리시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동의한 게 아닌데 동의한 것처럼 지금 잘못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다시 하지요. 제가 전체회의 계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국토부장관도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었는데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들었는데 이의가 없냐고 분명히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잘못한 건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유상범 간사께서 자리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때 계셨으면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통과시켜야 될 절체절명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분이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몇 분이 관련 법안.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다음번에 그건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법사위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오늘 통과시킬지 다음에 통과시킬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유상범 간사님이 안 계신지는 몰랐어요, 부재를. 그런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해서 의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원망을 하시면……

○**유상범 위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김승원 간사와 잠시 잡혀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김승원 위원** 간사 간에 협의드리려고 저는 따라 나간 건데.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다른 것들하고 한꺼번에 막 되면서 아까 그 논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기관 간에 의견을 조율한다고 했으니 적어도 그러면 그 기회를 주는 것 이……

○**위원장 정청래** 아니, 유상범 간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분명히 대체토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이하여 통과됐지?’ 이렇게 의문스러울 수는 있는데 절차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유상범 위원**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의결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 국회측 참석자

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 김용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이완규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병무청

청장 김종철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경찰청

청장 조지호

소방청

차장 이영팔

산림청

청장 임상섭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 법원측 참석자

법원 행정처

처장 천대엽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보고사항】

○ 의안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9)

이상 5건 11월 1일 회부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6)

이상 4건 11월 4일 회부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4)

이상 4건 11월 5일 회부됨